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음주운전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교통안전교육 교육과목과 교육과정을 내실화할 필요성이 있어 교육시간을 최대 48시간으로 확대하고, 특별교통안전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처벌을 강화하려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 확대(안 제38조)

나. 특별교통안전교육 미이수 범칙금 상향(별표 8)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4월 중 실시 예정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38조제2항 중 “16시간”을 “48시간”으로 한다.

별표8의 제67호가목 중 차량종류별 범칙금액란을 “15만원”으로 하고, 같은표의 같은 호 나목 중 차량종류별 범칙금액란을 “1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수정안																				
제38조(특별교통안전교육) ① (생략)	제38조(특별교통안전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하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이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시청각교육 또는 현장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3시간 이상 <u>16시간</u> 이하로 각각 실시한다.	② ----- ----- ----- ----- ----- ----- ----- <u>48</u> <u>시간</u> 이하로 각각 실시한다.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별표8]	[별표8]																				
<u>범칙행위 및</u> <u>범칙금액(운전자)</u> (제93조제1항 관련)	<u>범칙행위 및</u> <u>범칙금액(운전자)</u> (제93조제1항 관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text-align: center;">범칙행위</th><th style="text-align: center;">차량 종류별 범칙금액</th></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 <tr> <td>67. 특별교통안전교육의 미이수 가.(생략)</td><td style="text-align: right;"><u>6만원</u></td></tr> <tr> <td>나.(생략)</td><td style="text-align: right;"><u>4만원</u></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 </table>	범칙행위	차량 종류별 범칙금액	.	.	67. 특별교통안전교육의 미이수 가.(생략)	<u>6만원</u>	나.(생략)	<u>4만원</u>	.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text-align: center;">범칙행위</th><th style="text-align: center;">차량 종류별 범칙금액</th></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 <tr> <td>67. 특별교통안전교육의 미이수 가.(현행과 같음)</td><td style="text-align: right;"><u>15만원</u></td></tr> <tr> <td>나.(현행과 같음)</td><td style="text-align: right;"><u>10만원</u></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 </table>	범칙행위	차량 종류별 범칙금액	.	.	67. 특별교통안전교육의 미이수 가.(현행과 같음)	<u>15만원</u>	나.(현행과 같음)	<u>10만원</u>	.	.
범칙행위	차량 종류별 범칙금액																				
.	.																				
67. 특별교통안전교육의 미이수 가.(생략)	<u>6만원</u>																				
나.(생략)	<u>4만원</u>																				
.	.																				
범칙행위	차량 종류별 범칙금액																				
.	.																				
67. 특별교통안전교육의 미이수 가.(현행과 같음)	<u>15만원</u>																				
나.(현행과 같음)	<u>10만원</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통기획과	
연 락 처	(02) 3150 - 0659